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032
----------	-------

발의연월일 : 2025. 11. 7.

발 의 자 : 이상식 · 이해식 · 복기왕
양부남 · 위성곤 · 김문수
김승원 · 황운하 · 박정현
한병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경찰청에서는 방첩(防諜) 분야 정보활동과 수사를 연계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한 이후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하여 외국의 정보활동을 엄정하게 수사하는 등 종합적으로 대응 중임.

다만, 현재 경찰관의 직무에 방첩활동의 수행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방첩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둬으로써 경찰 방첩활동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경찰이 투명하게 방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11조의3제1항제3호).

법률 제 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대간첩·대테러 작전 및 방첩(防諜)활동”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제3호 중 “예방활동”을 “예방 및 방첩활동”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조(직무의 범위) ----- -----.
1. ~ 2의2. (생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3. 경비, <u>주요 인사(人士) 경호</u> <u>및 대간첩·대테러 작전</u> 수행	3. ----- <u>주요 인사(人士) 경호</u> , <u>대간첩·대테러 작전 및 방첩</u> <u>(防諜)활동</u> -----
4. ~ 7. (생략)	4. ~ 7.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 이 조에서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① ----- -----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테러범죄의 <u>예방활동</u> 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 <u>예방 및 방첩활동</u>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